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계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6월 9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운영희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운영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 국기법」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계양일을 지정하고,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국기선양사업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가로기 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국기계양대 설치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대한민국 국기법」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금천구의 국기 게양일을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, 금천구민의 날과 금천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여 금천구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였으며,
-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에서 명시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무상 보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